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40
----------	------------

제안연월일 : 2023년 9월 12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환기를 위해 천장과 30cm 이상 떨어트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의2는 칸막이 상단부는 제외하고 하단부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수정함.
- 안 제5조의2제1항에 “대변기 출입문” 이 중복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2. 주요내용

- “출입문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을 “출입문을” 로, “상·하단부의” 를 “하단부의” 로 수정함(안 제5조의2제1항).
- “출입문 상·하단부를” 을 “출입문을” 로, “상·하단부의” 를 “하단부의” 로 수정함(안 제5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제1항 중 “출입문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을 “출입문을”로, “상·하단부의”를 “하단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입문 상·하단부를”을 “출입문을”로, “상·하단부의”를 “하단부의”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p><u>제5조의2(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u></p>	<p>제5조의2(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u>출입문을</u>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u>하단부의</u>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p>
	<p><u>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u></p>	<p>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u>출입문을</u>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u>하단부의</u>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화장실 내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불법촬영 점검 등)”을 “(불법촬영 점검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화장실에서의”를 “화장실 등에서의”로, “화장실 불법촬영”을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화장실”을 “화장실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신 설></p> <p>제5조(불법촬영 점검 등) ① 교육감은 <u>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생 략)</p> <p>③ 교육감은 <u>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u></p> <p>④ (생 략)</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u></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불법 촬영 예방시스템 등”</u> <u>이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u></p> <p>제5조(불법촬영 점검계획 등) ① -- - <u>화장실 등에서의 -----</u> <u>----- 화장실 등의 불</u> <u>법촬영 -----</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화장실 등의 -----</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u></p>

<신 설>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 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화장실 설치 시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